



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기후위기 시대 아동권리 이슈와 경기도 정책 시사점

김 미 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1. 기후위기와 아동의 권리
2.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3.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아동정책
4. 경기도 정책 시사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 Women & Family Foundation

「이슈분석」 제280호(24-02)

기후위기 시대 아동권리 이슈와 경기도 정책 시사점

발행인 김혜순

발행일 2024년 4월 5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이슈분석」은 여성가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재단 홈페이지(www.gwff.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00)

요 약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위기를 포함한 지구의 삼중위기가 아동권리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점검해야 함
 -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본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 비추어,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아동정책을 검토하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함.
- 기후위기는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손실 및 피해의 측면에서 아동권리 관점의 조치를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할 것을 촉구
 - 특히 취약계층 아동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더욱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기존의 아동보호체계만으로는 아동보호와 피해복구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조치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급하고 대담한 조치의 필요성과 2050 탄소 순배출 0, 아동감수성이 높고 성인지적이며 장애를 포용하는 적응 조치의 중요성, 아동권리 관점의 고려 및 의사결정과정에 아동 참여, 고위험 아동 차별 금지 등을 지침으로 제시함.
-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비전 '스위치 더 경기'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을 목표로 경기도 2050 탄소중립정책과 경기 RE100 등을 적극 추진
 - 경기도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아동권리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의 아동권리 기반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참고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아동정책에서 아동권리 실현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경기도 탄소중립·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아동권리 기반 접근 관점에서 점검하여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실행하고, 이를 아동정책에도 반영해야 함
 - 취약한 아동이나 기후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고려한 재난안전대책과 강화된 보호체계 마련, 탄소중립도민추진단과 위원회 등에 아동참여 통로 보장, 도민 전체에 기후위기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통한 실천과 정책 확산 등이 요구되며, 모든 정책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아동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함.

목 차

1. 기후위기와 아동의 권리	1
2.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4
가.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4
나.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5
3.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아동정책	8
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의 근거 법률과 조례	8
나. 경기도 탄소중립 비전과 기후위기 적응정책	10
다.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14
4. 경기도 정책 시사점	17

1. 기후위기와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기후위기를 포함한 지구의 삼중위기가 아동의 권리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경고함.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존권을 포함 아동권리 전반에 영향”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산불, 가뭄과 폭우, 생물종의 멸종과 다양성 붕괴 등 전지구적으로 재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폭염이나 한파, 태풍 등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 그에 더해 주거환경과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 상황은 기후위기, 혹은 기후재난이라고 칭할 만큼 인간과 동식물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음. 기후변화의 누적적 영향으로 지구에 닥친 위기 상황은 생태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미래를 살아갈 아동의 권리에 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세계경제포럼의 2024년 Global Risk Report 2024에 의하면 전문가들이 전망한 가장 심각한 리스크는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음. 단기간 리스크에서 극단적 기상 이벤트(2위)와 환경오염(10위)이 상위권에 있고, 장기간 리스크에서는 1위가 극단적 기상 이벤트, 2위는 지구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3위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4위 천연자원 고갈, 그리고 오염(10위) 등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음(World Economic Forum, 2024).¹⁾ 즉,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는 수십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되면서 인간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 변동이든 시간에 경과에 따른 기후변화를 포괄하여 기후변화라고 정의함.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인간행위에 의한 기후 변화’만을 기후변화로 정의함. 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가 변하고 그로 인해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지칭하며, 기후변화가 인류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기후위기’라고 정의함.²⁾

1) World Economic Forum (2024).The Global Risks Report 2024 19th Edition : Insight Report. (https://www3.weforum.org/docs/WEF_The_Global_Risks_Report_2024.pdf)

2) 이상의 정의는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포털에 실린 정의에 따름.

(출처: https://kaccc.kei.re.kr/portal/climateChange/climatechange_list.do).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4년부터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협약을 비준하였음. UNFCCC 당사국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정기적으로 갱신 공표, 제출해야 하며,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충격 완화전략을 개발해야 함.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국가계획을 공표, 갱신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관련 기술이전과 확산을 촉진해야 함(신의순·김호석, 2005: 50-51).
- 이후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의 온도상승을 막는데 미흡한 것으로 보임.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에서는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으며 204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각 부분별로 신속하고 긴급한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그 가운데 하나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3%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음(IPCC, 2023).³⁾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건강피해에 관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폭염일수는 2000-2010년 10일 안팎에서 2010-2019년 15.5일로 증가했고, 한반도 열대야 일수는 2018년 17.7일이었음. 이는 저감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를 가정한 RCP 8.5 시나리오, 즉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41-2070년 예상한 수준이라고 함. 즉,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상황이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음.
- 그린피스 보고서에서는 의학저널 Lancet의 분석결과를 인용하여 폭염이 탈진,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신장질환(급성신장손상, 요로결석 등),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자살과 직접적 관련이 높다고 하였음. 또한 높은 온도는 특히 노인들의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 공기중 알레르기 물질 증가로 인한 천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그린피스, 2020).⁴⁾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3).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https://www.ipcc.ch/report/ar6/syr/downloads/report/IPCC_AR6_SYR_SPM.pdf)

4) 그린피스 (2020). 기후변화의 경고: 폭염과 건강피해.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특히 유아 및 어린이는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등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에 속하며, 4세 이하 유아와 그 이상의 아동 청소년들은 폭염상황에서 전해질 불균형, 발열, 호흡기 질환, 신장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기후변화는 전염병(말라리아, 쯤쯤가무시, 뎅기열 등) 증가, 미세먼지(PM2.5) 발생과 호흡기 질환(천식, 심폐질환 등), 꽃가루 활성화기간 증가에 따른 알레르기 비염의 증가와 연관되며, 폭염으로 인한 열스트레스가 기분장애, 불안, 불쾌감과 적대감, 공격적 범죄, 자살률 증가와도 관련이 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구의 삼중위기(기후 비상사태, 생물다양성 붕괴, 만연한 오염)가 아동권리에 위협이 되었다고 경고하고,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와 환경에 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를 발표하였음.⁵⁾ 일반논평 제26호에 따르면,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간의 권리이자 아동권리 향유를 위해 필수적임. 기후위기 결과를 포함한 환경의 악화는 기후위기 취약지역 아동의 권리 향유에 악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아동의 다양한 권리 행사는 환경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므로 아동권리와 환경보호가 선순환될 수 있다고 하였음.
- 일반논평 제26호의 목표는 환경보호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국이 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경기도는 2023년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비전인 “Switch 더 경기”를 발표하고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8개 과제를 추진하였음.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 30% 달성을 위해 경기 RE100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경기도와 전체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민선8기 임기내 공공기관 RE100 100%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약칭 이클레이)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정책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https://www.greenpeace.org/static/planet4-korea-stateless/2020/08/99b108b5-greenpeace_warning-of-climate-change_heatwaves-and-health-impact_web.pdf)

5)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3).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아동권리와 환경의 관계. 아동권리보장원 국문번역본. 일반논평 제26호는 총121개국 1만6천여 명의 아동이 자문에 참여하여 작성되었음.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성패는 미래를 살아갈 아동의 생존권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고에서는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악영향과 아동권리 기반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경기도 정책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기후위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가.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는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그러나 기후위기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는 제한적임”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22년에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안한 바 있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보호 공백, 학업성취 저하, 폭력과 학대 상황에 노출되게 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와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보고되고 있음. 기후변화 위기가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문헌을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22:11-27).

- (생존권) 기후위기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아동은 감염병에 성인보다 더 취약하며,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위협에 처할 수 있고, 기후위기 자체에 대한 인식이 두려움, 불안을 야기함.
- (보호권) 기후위기는 사회적 규범, 빈곤, 폭력적 상황 등을 악화시켜 아동을 폭력에 노출 시킴. 가뭄, 홍수, 자원 부족, 이주 등으로 인한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공포가 아동학대를 초래할 수 있음. 자연재해나 재난은 가정과 분리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 강제노동, 성착취, 인신매매 취약성을 높임. 기후위기 현상은 분쟁, 이주, 빈곤, 식량불안, 폭력적 행동을 야기하고 아동학대, 조혼, 노동, 성적착취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발달권) 자연재해, 질병 등 환경적 위협으로 매년 7,500만 명의 아동 중 절반이 교육을 받지 못함. 인도네시아 농업지역의 홍수, 가뭄, 그로 인한 흉작으로 그 지역 아동의 1/5이

학교를 그만 둔. 기후위기로 인한 이주는 가족과 사회적 유대의 단절, 고립과 소외 경험을 수반함. 미국 PSAT 응시학생 조사 결과, 기온이 화씨 1도 상승시 학습량이 1% 감소함. 특히 저소득층, 소수민족에서 피해가 심각함.

- (참여권) 아동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수동적 희생자로 표현되고, 의사결정과정 참여와 논의 및 행동에서 소외됨. 탄소중립시민회의 중 아동은 5%에 불과하고, 정책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후위기는 아동의 건강과 생명, 아동이 속한 미시적 거시적 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아동권리 전반에 걸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킴. 특히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취약계층 아동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더욱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 그러므로, 기후위기나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기존의 아동보호체계만으로는 아동권리 침해와 피해를 예방하거나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나. 아동 권리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6호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손실 및 피해의 측면에서 아동권리 관점의 조치를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할 것을 촉구”

- 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 아동권리 관점에 기반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서 촉구하고 있는 아동권리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반논평 제26호에서는 환경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손실 및 피해 측면에서 아동권리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표 1] 참조). 완화 조치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급하고 대담한 조치의 필요성과 2050 탄소 순배출 0, 적응 조치에서는 아동감수성이 높고 성인지적이며 장애를 포용하는 적응 조치의 중요성과 아동권리 관점의 고려 및 의사결정과정에 아동 참여, 고위험 아동 차별 금지, 그리고 인권 관점에서의 손실과 피해 해결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이 핵심적임.

-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완화방안과 관련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연구를 통해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의 완화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공적 영역에서의 제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강화, 공공 의료체계를 통한 건강권 보호, 아동보호 정책 강화 및 지역아동보호시스템 구축, 재난재해 대비 위한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공교육에서 기후위기 관련 체계적 교육, 정보접근성, 기후위기 정책 및 법 제정 시 아동 참여기회 보장, 관련 정책실행에 대한 아동모니터링 강화 등임(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22:74-76).
-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관련하여 제안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초중고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향은 관련 교육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동권리 관련 기후위기 대응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와 심각성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기후위기 교육의 의무적 시행, 기후위기 관련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출 활동 실시, 교사 외 전문적 인적 자원 확보, 학교와 관계기관 간 협력, 아동·청소년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음(김민주·이성희·신동훈, 2023).
- 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결정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제정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기후행동 공간’이 필요하고, 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 교사연구, 전문인력 교내 배치 등 학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음(이성희·변성국·조정림·신동훈, 202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행동과 관련하여, 윤순진(2023)은 아동과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후시민의 기후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였음. 즉, 생활속 기후친화 실천과 에너지 생산자 되기, 정치 행위자로서 기후 해결 의지를 가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정치 투표 잘 하기, 시장행위자로서 경제투표(소비-화폐를 통한 투표) 잘 하기, 환경에너지기후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참여/조직 등에 나설 것을 제안하였음.

[표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의 아동권리 기반 기후변화 대응

구분	내용
기후변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가 인권 의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시급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 임계점을 피하기 위해 시급하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 - 완화목표와 조치는 최선의 과학에 기반, 아동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0'에 도달할 방법을 확보해야 함. - 완화 조치 결정 시 잠재적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염두에 두어 다음을 고려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아동권리를 존중, 보호, 실현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지시해야 함. (b) 기후변화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에서 공정한 기여분을 반영해야 하며,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 역량에 맞게 기후 공약을 지속 강화해야 함. (c) 괴멸적 기후변화와 아동권리 피해 예방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시급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 연속적 완화조치와 갱신된 서약은 진전된 노력을 나타내야 함. (d) 단기완화 조치를 취할 때 화석연료 퇴출이 지연될 경우 아동권리에 피해가 커짐을 고려해야 함. (e) 완화조치는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써서는 안 됨. 가장 짧은 기간에 아동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지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자연 훼손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출량 감축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기후변화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감수성이 높고 성인지적이며 장애를 포용하는 적응조치 및 연계된 자원의 설계와 이행을 급격하고 시급하게 늘려야 함. 법적, 제도적 체계의 기후회복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적응계획과 정책이 자국 관할권내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도록 지원함으로써 기후관련 위험요인을 해결해야 함. (예: 취약상황에 대비한 아동보호제도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 물, 위생, 보건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사회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우선 고려) - 재해 위험 감소, 대피, 대응 및 복구를 포함한 적응 조치는 아동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아동은 기후관련 결정이 본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적응조치의 설계나 시행이 영유아, 여아, 장애아동, 이주아동, 원주민아동, 빈곤 또는 무력 분쟁 상황에 처한 아동 등 고위험 아동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됨. - 기상 이변 같은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학교, 물, 위생, 보건 등 기반시설의 물리적 안전과 회복력 강화로 위해요소 저감.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실항에 대응해야 하며, 아동권리에 기반하여 해당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함. 기상 이변 등 기후변화 관련 피해 위험이 임박한 경우, 국가는 아동과 보호자 및 지역사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즉시 배포.
손실 및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상당한 손실과 피해를 입혔음. - 기후변화 관련 손실과 피해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홍수, 폭우, 가뭄 등), 간접적(국가, 지역사회, 학부모가 원래 교육, 보건 같은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원을 환경 위기 해결에 재분배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음. - 인권의 관점에서 손실과 피해는 원상복구, 보상, 재할 등 구제권 및 배상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국가는 손실과 피해 해결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 등 조치를 취해야 함.

자료: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23).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내용에서 발췌하여 연구자가 표로 정리함.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여성과 아동 인권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이요바, 2023)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여성아동 정책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데,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의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주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아동의 참여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이상과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권리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 조치의 지침과 아동권리와 기후위기에 관한 관련 연구의 제언에 기반하여 볼 때,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적절한지, 보완의 필요성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아동 정책

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의 근거 법률과 조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 진흥 조례 등 제정”

-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이 법에 기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등을 법적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2021년 9월 제정되었으며 202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현행 기본법의 제1조에 제시된 목적을 요약하면,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 예방,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불평등의 해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증진,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임. 즉,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서 출발하여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본법은 총칙과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시책,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 그리고 보칙의 총 11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⁶⁾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령 개선, 재정투자 등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음.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자치법규로 다음과 같은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음. 우선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2022년 7월 19일 제정되었음. 이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 기반 마련, 도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공공기관 사업자 및 도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조치 강구, 사업자 및 도민에게 관련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총칙,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의 6개 장과 보칙까지 총 7개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10월 제정, 시행 중인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69조 제4항을 근거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하는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목적, 설치 및 조성, 용도, 운용 및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운용계획의 결산,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담고 있음.
 -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시책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RE100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후테크 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는 2021년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 조례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6) 제3조에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서 8가지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2. 종합적 위기 대응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기후위기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 수립, 4. 기후정의 추구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5.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개편을 통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 구현, 6. 기후위기 극복과 동시에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충/국제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 7.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8.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및 협력 강화 등이 그것임.

는 것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조례는 목적과 정의, 교육감이 져야 할 책무,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와 기능, 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교원 연수 등, 지역 사회 협력망 구축,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 환경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함양하기 위한 시책 시행, 문화 조성, 환경교육 활성화, 학교 운영 전반의 생태적 전환 노력 등의 책무를 지님.
- 교육감은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환경교육 정책 자문기구로 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두며, 환경교육 활성화사업, 우수학교 지정/지원, 교원연수, 평가 연구 등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이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1년 10월 제정, 시행 중인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 이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음.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도내 생산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우선구매 요청 등 소비촉진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나. 경기도 탄소중립 비전과 기후위기 적응정책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비전 ‘스위치 더 경기’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을 목표로 2050 탄소중립정책, 경기 RE100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는 2023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비전으로 ‘스위치 더 경기’를 발표하고 RE100 등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⁷⁾

7)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2). 제2024년 주요 업무보고 - 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집.

- ‘스위치 더 경기’ 비전 하에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여 8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음. 8개 추진분야는 에너지, 도시·건축·산림, 교통, 농축수산, 폐기물, 도민실천, 기후테크, 기후적응임.
- 특히 에너지 분야(Swith the Energy)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경기도 대표적 기후위기 대응정책인 RE100을 추진 중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기 위해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2024년에는 공공분야에서 공공기관 RE100 추진 로드맵 수립과 랜드마크 조성, 학교태양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업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RE100 성과 창출, RE100 특구 추진 계획 수립, 산업분야에서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RE100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임. 도민에 대해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탄소절감 실천 시 기회소득 지급)을 도입하는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기후환경정책과를 비롯한 9개 과 1개 사업소(산림환경연구소)이며, 2024년 기준 연간 3,782억 원의 예산을 관장하고 있음.
 -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관리과, 에너지산업과, 에너지관리과, 대기환경관리과, 환경보전안전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정원산업과와 산림환경연구소 등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 경기도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3월 26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음. 기본계획은 ‘스위치 더 경기’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구의 열기를 끄다(OFF), 지속가능성을 켜다(ON)’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교통 분야 등 6대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대응 기반 대책을 제시하였음([그림 1] 참조).

[그림 1]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체계도



자료: 경기도 보도자료(2024.3.5.) 경기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추진체제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도민협의체인 탄소중립도민추진단 구성, 탄소중립센터 설치, 기후대사 위촉 등을 추진했음. 재정 측면에서는 2024년 본예산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함.

-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있는 도민 중 서면심사로 선발, 300여 명 넘는 규모로 2023년 9월 발족하였음. 도민추진단의 활동은 시군의 탄소중립 정책 숙의과정에 참여하거나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임.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앞서 경기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란 기후변화 대응의 한 축인 온실가스 감축과, 또 다른 한 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연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행계획임(경기도, 2022).⁸⁾
 -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제3차 국가대책의 6대 부문별 리스크 항목을 기반으로 지역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해 6대 부문의 리스크 목록을 도출하고 관련한 비전과 세부전략을 도출하였음. 주요 리스크를 우선순위 순으로 보면, 건강이 1순위로, 이는 기온상승 → 대기오염 악화 → 조기 사망자 증가, 각종 질환 및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 정신건강 질환 증가 등의 파급을 일으키기 때문임. 이어서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국토연안, 산업/에너지 부문 순임.
 - 기후변화적응 건강 부문의 세부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취약층 관리’,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의 추진전략 하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 및 관리체계 확립, 경기도형 맞춤형 폭염 피해 저감대책,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대기오염 집중관리, 감염병 대책 강화와 관련한 이행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이밖에 국내외 정책 협력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매년 4월에 기후변화 주간, 6월에 환경교육 주관을 선포하여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 홍보 등을 하고 있음.

8) 경기도 (2022).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요약본.

[그림 2]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자료: 경기도(2022).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p.41

다. 아동권리 관점에서 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경기도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아동권리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음. 아동정책에서도 기후위기 시대 아동권리 실현 위한 방안 반영해야”

-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아동권리 관점에 입각한 고려나 과제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위기는 아동의 기본권과 제반 권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서 촉구하고 있는 아동권리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경기도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상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혹은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

본계획(2021-2025)⁹⁾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아동의 참여와 권리실현,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촘촘한 아동돌봄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동정책의 4대 추진전략에 따른 12개 정책과제, 103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정책과제 중 기후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사업은 4-1-3. 재난 시 가정 내 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4-3-1.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4-3-2. 재난 상황 대비 공공돌봄 체계화임.

- 재난 시 가정 내 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시기에 가정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양육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놀이지원으로 돌봄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사업임.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건강취약층인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임. 재난상황 대비 공공돌봄 체계화는 코로나 19 등과 같이 사회적 돌봄 공백이 증가하고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설간 연계 통한 긴급돌봄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연계, 감염병 등 재난발생시 대체인력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함.

[그림 3]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개요

비전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	
목표	아동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추진 전략 및 과제	아동의 참여와 권리실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리주체로서의 아동 참여 2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환경 구축 3 아동의 놀권리 고취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의 신체·마음건강 보호 2 맞춤형 교육지원 3 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
	촘촘한 아동돌봄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형 아동보호 활성화 2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3 취약아동 지원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동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양육 지원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 재난 및 위기 대응

자료: 경기도(2021).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9) 경기도 보도자료(2021.9.16.).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 위해 5년간 103개 사업 추진-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한편 ‘아동의 참여와 권리실현’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첫 번째 추진전략이며, 관련한 세부사업으로는 (가칭)경기도 아동참여 게시판 운영, 경기도 아동정책 포럼, (가칭) 경기도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경기도 아동정책 영향평가, (가칭)경기도 아동위원 풀 운영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같은 세부사업 계획은 경기도정 전반에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욕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임.
 - 경기도의 아동정책은 2021년 시행계획 평가에 이어 2022년 시행계획 평가까지 2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정책 우수 지자체로 평가 받은 바 있음(경기도 보도자료 2023.11.23.).
- 그 연장선 상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아동정책에서도 아동권리 기반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 결정과정에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권리주체인 아동의 입장에서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이상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 조례 및 아동정책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에서 제시한 아동 권리 기반 조치에 비추어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2] 아동권리 기반 기후변화 대응 지침에 의거한 경기도 정책 검토

구분	내용	경기도 조례 및 정책
기후변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온실가스 40% 감축, 2050 탄소중립-와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관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완화 조치의 자연이 기후시스템과 건강권 등 아동 권리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 2050 탄소중립에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확보 및 중단없는 추진이 요구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변화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감수성이 높고 성인지적이며 장애를 포용하는 적응 조치, 법적 제도적 체계의 기후회복력 강화와 아동 적응력 향상 지원, 기후관련 위험요인 해결, 이상의 조치가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필요 - 취약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취약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체계 강화, 기후 관련 재해 위험의 감소, 대피, 복구 등에서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아동, 이주아동, 빈곤, 상습재해발생지역이나 취약주거 거주아동을 위한 위험요소 점검 및 재난발생시 대피, 이주 등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필요 - 기후관련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아동 참여기회 제도적 보장 필요 - 아동권리 관점의 학교 환경교육의 내용 반영 및 확대 필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조례, 기후변화 적응대책 탄소중립 기본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손실 및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로 인한 아동권리의 손실과 피해 해결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국제협력 추진 	탄소중립 기본계획

자료: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의 대응 지침을 근거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함.

4. 경기도 정책 시사점

“향후 경기도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아동권리 기반 접근 관점에서 점검하여 아동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실행하고 이를 아동정책에도 반영해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이나 자기희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자본의 문제이며 화석연료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국가는 고통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홍중호, 2023: 248-249)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임. 전지구적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협에 직면하여 에너지와 산업, 경제, 사회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국가경제 차원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장차 아동의 생존과 삶의 기반을 좌지우지하며, 앞선 세대가 향유해왔던 자연환경과 생태환경, 사회문화적 조건을 예전과 같이 누릴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권리에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경기도의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정책, 그리고 아동정책, 그 외 여러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아동의 생명과 발달과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과 도민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대단히 중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아동권리의 관점이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예컨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 조치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취약한 아동이나 기후 재난 상황에서 아동을 고려한 재난 안전대책과 강화된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둘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동 관점에서의 정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의 대표성을 높이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 탄소중립도민추진단 등 숙의기구에 아동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도 아동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이미 제안된 바와 같이, 아동의 정책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미래와 매우 밀접한 탄소중립 정책이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해야 할 것임.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가장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경기도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한 도민의 참여 통로는 탄소중립도민추진단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추진단에 18세 미만 아동 참여자는 없으나,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미래세대를 살아갈 권리주체인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 대표성을 높여야 함.
- 또한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제안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통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학교 환경교육뿐 아니라, 도민 전체가 기후위기 문제의 시급성과 중대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등 거시적 변화의 측면,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미칠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이렇게 하여야 개인과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자국 줄이기 같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노력이 확대될 수 있고, 시군 및 시도 단위에서도 산업구조와 일자리에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정책 의사결정에 당사자들의 권리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임.

○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정책분야에서 기후변화와 아동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아동들이 더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경기도 (2021).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경기도 (2022).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요약본.
-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4.2). 2024년 주요 업무보고 - 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집.
- 그린피스 (2020). 기후변화의 경고: 폭염과 건강피해.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 김민주 · 이성희 · 신동훈 (2023). 아동 권리 관련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아동 · 청소년 인식 및 대응 활동 참여 실태 조사.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3(1), 51-69.
- 신의순 · 김호석 (2005).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파주시: 집문당.
- 유니세프 아동의회 (2023). 2023 유니세프 아동의회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23).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아동 권리와 환경의 관계. 아동권리보장원 국문번역본.
- 윤순진 (2023). 기후위기 대응, 아동의 권리와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걸음. 아동권리보장원 (2023.9.22.). 2023 아동권리포럼 제2회 아동권리와 기후환경 자료집. 1-16.
- 이성희 · 변성국 · 조정림 · 신동훈 (20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 · 청소년의 참여방안 연구. 에너지기후변화교육 13(2), 103-124.
- 이요바 (2023). 기후위기 속 여성과 아동의 인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22). 기후변화 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방안.
- 홍중호 (2023).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파주시: 다산북스.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23).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 World Economic Forum (2024). The Global Risks Report 2024 19th Edition: Insight Report.